

중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계약청약서

중소기업중앙회 보관용 / 고객 보관용

청약자(성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자택주소		휴대폰
※ 국내 비거주자는 관련법에 따라 소득공제가 제한됩니다		자택전화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증상 업체명 기재 ☐ 무등록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법인등록번호 123456-1234567
업체주소		업체전화번호 업체 FAX
개업일	년 월 일 업태 사업자등록증상주된업태기재	종목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종목 기재
매출액	직전년도 년 직전년도-1 년 직전년도-2 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상시근로자수 명(년 월)
※ 증빙 가능한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기재 ※ 사업기간이 3년미만인 경우 사업기간 중 연매출액 기재 ※ 사업기간 1년미만인 경우 예상 연매출액 기재		※ 일용 근로자 및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가 없는 경우 '0'으로 기재
청약금(부금월액)	청약금액은 반드시 한글 기재 원	연락받으실주소 자택 ☐ 사업체 ☐ 문자메세지수신 동의 ☐ 미동의 ☐ E-mail 수신 동의 ☐ 미동의 ☐
※ 부금월액은 최저 오만원에서 만원단위로 최고 일백만원까지이며 분기납의 경우 3개월분의 부금을 매 분기 납부합니다.		
신분증 확인	☐ 주민등록증(발급일자) 2018-01-01 ☐ 운전면허증(면허번호) 서울01-234567-89 ☐ 여권(만료일자) 01-Aug-2018	☐ 외국인등록증(발급일자) 2018-01-01 (암호일련번호) 오른쪽 사진 아래 숫자영문혼합번호

예금 계좌 자동이체 지정·신청							
예금주	거래은행	계좌번호					
이체일	☐ 월납	매월	일	☐ 분기납	매분기	째달	일
1. 위 예금계좌를 공제부금의 납부공제계약대출금의 상환공제금의 수령 등 공제계약상의 일체의 거래에 관한 계좌로 지정·신청합니다. 2. 위 예금계좌의 잔고가 이체일에 납부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금이 연체된 것으로 보며, 연체 해소를 위해 익일부터 일정기간 이체 처리합니다. 3. 위 예금계좌 자동이체 신청에 의하여 납부한 부금 금액에 대하여는 중앙회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며 이체된 부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들었음							

지방자치단체 가입(희망)장려금 신청	신청 ☐ 미신청 ☐
1. 장려금은 해당 지자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원되므로,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이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2. 장려금 수급자는 사업장 이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바, 만약 동 기간 내 사업장 이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장 이전 전에 기 지원한 장려금을 포함한 장려금 전액이 지급되지 아니하며, 장려금 수령 시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장 이전 사실(필요시 사업장 이전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신규 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해야 하며, 동 기간 초과시에는 장려금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장려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원예산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본인은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의 <u>설명을 들었음</u>	

청약자 확인 사항
1. 약관의 주요내용, 관련세제, 청약서 내용에 대해 충분히 <u>설명을 들었음</u> ※공제사유가 아닌 임의해약시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부금납부월수가 12회이하인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임의해약 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2. 청약서는 청약자가 직접 <u>자필서명(날인) 함</u> ※청약자는 반드시 자필서명(날인)으로 청약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작성한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회 고객센터에서 약관의 수령, 약관의 주요내용 설명 및 자필서명 여부를 전화로 확인 시, 청약자 사정으로 통화 연결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화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간주되어 청약한 바와 같이 <u>계약을 유지함</u>

본인은 위의 예금계좌 자동이체 지정·신청 및 청약자 확인사항의 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기에 중소기업·소상공인공제계약 약관에 따라 위의 기재한 내용과 같이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계약을 청약**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제출일

년

월

일

청약자

서명(날인)

가입권유자 성명

소속단체명

가입권유자 코드

전화번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핵심설명서

중소기업중앙회 보관용 / 고객 보관용

약관의 주요내용

- **청약의 철회** | 계약자는 청약일 또는 청약금 납부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중앙회가 약관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무효** | 계약자가 청약일 이후, 청약시점에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자가 아니거나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약관이 정한 공제가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임이 밝혀진 때에는 중앙회는 계약을 무효로 보아 해지합니다.
- **계약해지** | 계약자가 부금의 납부를 12개월 이상 연체한 때는 중앙회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준이율** | 기준이율은 공제금의 지급률 및 기타 각종 지급·수취이율의 기초가 되는 이율로 중앙회에서 매 분기 초일에 정하여 3개월간 적용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는 1.5%, 5년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1%입니다.
- **공제사유** | 중앙회는 계약자의 폐업, 사망, 질병·부상에 의한 법인 대표자의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 계약자가 공제금 지급청구 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공제금** | 공제금은 부금납부월수가 6회 이하인 경우에는 부금 원금을 지급하며 7회 이상인 경우에는 부금에 일정 이율로 계산·적립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공제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자(또는 그 상속인)는 이를 중앙회에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 **해약환급금** |
 - 간주해약환급금은 부금납부월수가 36회 이하인 경우에는 부금원금을 지급하며 37회 이상인 경우에는 부금에 일정 이율로 계산·적립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일반해약환급금은 부금납부월수가 12회 이하인 경우는 원금보장이 되지 않으며, 13회 이상인 경우 약관이 정한 바에 의해 납부횟수에 따른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구분	해약환급금 지급사유	해약환급금
간주해약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설립을 함으로써 폐업	간주해약환급금
	개인사업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	
	질병·부상 이외의 사유로 인한 법인 대표의 퇴임	
임의해약	계약자의 개인사정에 의한 해약청구	일반해약환급금
강제해약	12개월 이상의 부금연체로 중앙회에 의한 해약	일반해약환급금
	부정행위로 중소기업중앙회에 의한 해약	일반해약환급금의 80%

간주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

해약시 부금납부월수	간주해약환급금	해약시 부금납부월수	간주해약환급금
1회 이상 36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	37회 이상인 경우	37회차 부금을 납부한 다음 날부터 간주해약사유 발생일까지 납부한 부금에 대해 기준이율로 계산·적립한 금액

일반해약환급금 지급기준표

해약시 부금납부월수	일반해약환급금	해약시 부금납부월수	일반해약환급금
1회 이상 3회 이하	납부부금의 80%	73회 이상 12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50%
4회 이상 12회 이하	납부부금의 90%	121회 이상 18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70%
13회 이상 6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181회 이상 240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80%
61회 이상 72회 이하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40%	241회 이상	납부부금의 100% + 퇴임·노령 공제금 이자*의 95%

*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기준이율로 부리적립한 금액 중 납부부금을 제외한 지급이자

※ 약관의 주요 내용을 선별하여 요약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법 적용사항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사업소득금액	연간 소득공제 한도	근로소득금액	연간 소득공제 한도
부금납입시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300만원	4천만원 초과~5,675만원 이하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5,675만원 초과	-
	※ 신고대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따라 매년 소득공제한도가 달라지거나 소득이 소득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등 관련 세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납부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법인대표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시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 공제금(해약환급금) 지급연도의 납부부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부동산임대업소득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고,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간 소득공제 한도에서 그 비율 $\left(\frac{\text{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text{사업소득금액}} \right)$ 만큼 차감됨			
공제금 지급 및 간주해약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므로 공제가입기간이 짧고 소득공제 받은 금액이 많을 경우 퇴직소득세액이 이자보다 많아져 지급시점의 실수령액이 납입원금보다 적어질 수 있음			
일반해약시	소득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지방세 포함) 원천징수되며,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이루어짐			

※ 공제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핵심설명서의 내용 설명을 잘 듣고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일자

년

월

일

확인자

서명(날인)

기타 문의사항은 노란우산 고객센터 1666-9988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기업중앙회 보관용 / 고객 보관용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 귀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본인은 귀 회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조회·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필수]	공제 계약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분쟁해결·전화상담업무·민원처리·본인여부 확인·제도변경 안내·법령상 의무이행, 기타 부가서비스 및 이벤트 관련업무 등
수집·이용 항목[필수]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휴대전화번호, 자택주소, 자택전화,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 법인등록번호, 업체연락처, 개업일,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이메일주소, 계좌정보 등 - 기타 공제 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수집·이용 목적[선택]	중앙회가 추진하는 타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조사·상품·서비스 홍보·판매권유 등
수집·이용 항목[선택]	필수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일부정보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위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계약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의 업무만을 위해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철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수] 사항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거부시 계약을 체결·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선택]사항은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영 정보 및 서비스 안내,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중앙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여부 [필수]	중앙회가 위 [필수]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의2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여부	[필수] 사항에 대해 중앙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사항에 대해 중앙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조회·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공유 포함) [필수]	- 계약이행을 위한 업무수탁업체에 대한 제공 - 가입대행 업무수탁처, 고객센터, 단체상해보험 협약보험사, DM업체, 경영지원단 및 부가서비스, 이벤트 등 고객서비스 사업을 위해 필요한 업체, 공인전자문서 보관업체, 문서전자화위탁업체, 전산 유지보수 관련업체 등 - 중앙회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며,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탁현황' 상세내역은 홈페이지(www.8899.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법원, 국세청 및 각급세무서, 지방자치단체, 금융결제원 등 사업을 위해 필요한 행정기관
제공받는 자(공유 포함) [선택]	정보제공·조사·상품·서비스 홍보·판매권유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공제 계약의 이행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로서 단체보험 가입, 보험금 지급, 공제가입·변경·지급신청 대행, 안내서비스, 계약관련 서류발송 등 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제공할 개인(신용)정보 항목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등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관한 사항	위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철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필수] 사항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거부시 계약을 체결·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선택] 사항은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영정보 및 서비스 안내, 경품지급, 사은행사 등 중앙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 제공 동의 여부 [필수]	중앙회가 위 [필수]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조회·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근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의2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여부	[필수] 사항에 대해 중앙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선택] 사항에 대해 중앙회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일자 년 월 일 동의자 서명(날인)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역별 문의처

노란우산 홈페이지 www.8899.or.kr 고객센터 1666-9988

지 역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주 소
서울 지역	여의도(본부)	02-2124-3355~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중소기업중앙회 1층
	상 암	02-761-7991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89 (상암동) 중소기업DMC타워 20층
인천·경기지역	인 천	032-437-8705	인천광역시 남구 미추홀대로 694 (주안동) 교보생명빌딩 7층
	부 천	032-326-2430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22 (삼정동) 부천테크노파크 1단지 관리동 401호
	수 원	031-254-483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이의동)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0층
	양 주	031-851-0164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15 (산북동) 경기섬유지원센터 205호
	안 산	031-492-2575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3 (고잔동) 신앙타운 314호
부산·경남지역	부 산	051-861-9376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8 (연산4동)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8층
	울 산	052-283-4323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연암동) 울산경제진흥원 5층
	창 원	055-281-2302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 (대원동) 창원컨벤션센터 401호
대구·경북지역	대 구	053-524-2110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487 (용산동) 대구기업명품관 3층
전북·전남지역	전 주	063-214-660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효자동3가 1525-2) 전주상공회의소 5층
	광 주	062-955-9966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도천동)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3층
충북·충남지역	청 주	043-236-7082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가경동) 충청북도기업진흥원 5층
	대 전	042-864-091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47 (둔산동)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2층
	천 안	041-622-3823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63 (성정동) 충남타워 901호
강 원 지 역	춘 천	033-241-0010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19 (온의동) 강원도향토공예관 3층
	원 주	033-733-0514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우산동)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8호
제 주 지 역	제 주	064-752-857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연동) 건설회관 9층

가입권유자 연락처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희망)장려금 지원 주요내용

가입(희망)장려금 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소정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신규가입자) ※ 강원도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제외/강원도에 한하여 신청일 현재 도내 업력 1년이상인 공제 가입 소상공인 ※ 소상공인 요건(상시종업원 수)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5명 미만(그 밖의 업종)
신청방법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 등 제출 (단,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 제출 가능) * 매출액 증빙서류 : 직전연도(신규창업시 당해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재무제표 - 대체가능서류 : 사업자등록증(간이과세자), 면세수입금액증명원(면세사업자),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무등록소상공인), 주택임대차계약서(신규 주택임대사업자) * 주소이력 사실증명서(강원도에 한함)
지원방법	매월 공제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이자를 지급 * 일반해약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
지원기간	공제 가입일로부터 1년간 지원(최대 12회) ※ 강원도에 한하여 신청일로부터 2021.12.31.까지
유의사항	①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 접수 확인해야 하며 30일 초과후 제출, 접수 미확인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② 적립된 장려금은 공제계약 해지 시 지급되고,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해지 시에는 장려금이 지원되지 않음 ③ 2회차 부금 납입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시에는 지원되지 않음 (단, 가입일로부터 1년내 미납부 납입 시 지원) ④ 장려금은 지원신청 당시 지자체 소재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장려금 지원기간 중 해당 지자체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음 (사업장 이전시 해당사실을 중소기업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않는 경우 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 * 강원도의 경우, 강원도내 타 기초지자체로 이전시 기존 지원은 중단되고, 변경된 기초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원됨 ⑤ 장려금 지원기간 중 폐업 등 공제금 지급(간주해약 포함)사유 발생시에는 해당사유 발생일까지 지원함 * 지자체별 지원대상,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정책, 예산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⑥ 공제금(간주해약환급금)지급 시 장려금과 장려금 이자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임의해약환급금 지급 시 장려금만 지급하고 장려금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
신청문의 및 제출처	- 고객센터 ☎1666-9988(서류제출 FAX : 02-6442-7259 또는 E-MAIL : kbizhope@kbiz.or.kr) - 금융기관 가입창구, 공제상담사

< 참고 >

지자체별 장려금 지원조건 (2019. 7.1일 기준)									
	지자체	지원대상 (연매출)	지원금액 (월)	최대 지원금액		지자체	지원대상 (연매출)	지원금액 (월)	최대 지원금액
광역	서울시	2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기초	강원 내 전체 시,군	1억원 이하	5만원	150만원
	부산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북 내 시,군 (청주시 제외)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대구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인천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북 청주시*	2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광주시	2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남 당진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대전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울산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북 내 전체 시,군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세종시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기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남 광양시	2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충청남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전라남도	3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경남 양산시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경상남도	3억원 이하	1만원	12만원					
	제주도	2억원 이하	2만원	24만원					

* 청주시의 경우, 충북지역본부 통해서만 신청 가능